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고유의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동방 문화 전반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연마하고 창달하여 민족의 전통과 현대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양양 선도함과 아울러 세계문화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1개정>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2015.03.01개정>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에 둔다.<2012. 8.13수정>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2.08.14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08.14신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2007.11.30개정>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 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006.11.9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06.11.9 신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 내지 제17조 <2006.11.9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020.10.16개정>

②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2008.2.18개정>

제18조의 2 (상근임원) ① 제18조 제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2020.10.16개정>

2. 감사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20.10.16개정>

② <2002.10.21삭제>

③ <2014.03.01삭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2006.11.9 개정>

② <2006.11.9삭제>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2006.11.9삭제>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⑥ 임기 내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2012.8.13신설>

제20조의 2(개방이사·감사의 자격) 개방이사와 감사는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 한다. <2012.8.13개정>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2018.5.24개정>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 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2012.8.13개정>

② <2012.8.13삭제>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2007.11.30 개정>

④ <2012.8.13삭제>

제20조의 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회 내에 둔다.

<2015.03.01개정>

②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12.8.13수정>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7.11.30 신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2012.8.13수정>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11.9 개정>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2006.11.9개정>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

어야 한다. <2006.11.9 개정>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2007.11.30개정>

⑥ 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8.13수정>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2.8.13수정>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006.11.9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2007.11.30삭제>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2.8.13수정>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2012.8.13신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2012.8.13수정>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2012.8.13수정>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12.8.13수정>

제 2 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2.8.13수정>
1.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012.8.13수정>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2012.8.13수정>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교원 및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012.8.13개정>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006.11.9개정>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8.13개정>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 2 (이사회 회의록작성 및 공개) 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2012.8.13신설>

②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8.13수정>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2012.8.13수정>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인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2.8.13신설>

제 3 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006.11.9신설>

제31조의 3 (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8.13개정>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006.11.9신설>

제31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2012.8.13삭제>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2006.11.9신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2006.11.9신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006.11.9신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06.11.9신설>

제31조의 7 (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학교의 장이 부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2012.8.13수정>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007.11.30개정>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007.11.30개정>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2007.11.30개정>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2007.11.30개정>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2006.11.9신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임대사업 및 대관업 <2006.11.9신설>
2. 각종 건강보조제품 제조판매 <2017.02.24삭제>
3. 의료기관 설립 경영<2017.02.24삭제>
4. 요양기관 설립 경영<2017.02.24삭제>
5. 사회복지 기관 경영<2017.02.24삭제>
6. 문화사업 설립 운영<2017.02.24삭제>
7. 기타 수익사업 일체<2017.02.24삭제>
8. 동방문화원(비학위과정) 설치운영<2017.02.24개정>

제32조의 2(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방문화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2012.8.13수정>

제32조의 3 (사업체의 주소) 동방문화사업단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에 둔다.<2012.8.13수정>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의 2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36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7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중임할 수 있다.<2017.01.20개정>

③ 학교의 장이 재임 중이거나, 임기만료 시 정년에 해당 될 경우 이사회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020.10.16개정>

제38조(교원의 임용) 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후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2012.8.13개정>

1. 교 수 : 7년 <2012.8.13개정>

2. 부 교 수 : 5년 <2012.8.13개정>

3. 조 교 수 : 4년 <2012.8.13개정>

4. <2012.08.13삭제>

5. 비전임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 후 총장이 위촉한다. 단 명예, 석좌, 초빙, 겸임, 계약, 특임교수는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9.05.17개정>

6.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다.

7. 비 정년 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2012.08.14신설>

② 학교의 처·실장 등의 보직은 이사장의 승인 후 학교의 장이 보한다.

<2013.08.13개정>

③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012.08.13신설>

④ <2011.02.28삭제>

⑤ 제1항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⑥ 신규 교원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비 정년트랙은 예외) 이상을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2014.03.01.개정>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2016.11.23.신설>

제38조의 2 (교원의 정년) <2016.11.23.삭제 제38조⑦이동>

제 2 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007.11.30개정>
8. 관할청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006.11.9신설>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006.11.9신설>

제40조(휴직의 기간) <2006.11.9개정>

1. 제39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06.11.9개정>
5. 제39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11.9개정>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06.11.9개정>
8. 제39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6.11.9개정>
9. 제39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6.11.9신설>
10. <2020.10.16삭제>

제41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3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해임요구) ① 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이사장에게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012.8.13신설>

1.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2012.8.13신설>
제43조의2(직위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8.13신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제44조(보수)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2012.8.13신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2012.8.13신설>

제45조의 2 (명예퇴직수당)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2006.11.9 신설>

제46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2 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6.11.9개정>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06.11.9개정>

1. 대학의 장이 교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할 때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2012.9.3수정>

2. 대학의 장이 처장의 보직임명과 관련된 사항

<2012.9.3개정>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학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 근무기간 중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2.9.3수정>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봉사영역 및 학교기여도 등의 활동과 실적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5인으로 조직한다.<2012.8.13개정>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2013.05.01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 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3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2012.8.13수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위원은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2.8.13개정>

③ <2012.8.13삭제>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2.8.13신설>

제57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012.8.13신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2012.8.13신설>

제59조(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 이사장은 교원이 제57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제61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이사장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2.8.13신설>

제63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2012.8.13신설>

제64조(감사원 및 검찰·경찰의 조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8.13신설>

제6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4조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12.8.13신설>

제66조 (운영세칙) <2006.11.9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67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2014.04.01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2012.9.3.개정>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8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등 제반인사 발령은 이사장이 한다.<2012.8.13.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2000.04.21 삭제>

④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2012.8.13신설>

제69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이 필요할 경우 별정직으로 재임용 할 수 있다.<2015.5.22개정>

제7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2012.8.13개정>

제7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2.8.13수정>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4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학원대학교

- 제75조(총장, 부총장) ① 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2006.11.9삭제>
- ④ <2006.11.9삭제>
- ⑤ 대학원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2012.9.3신설>
- 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2.9.3.신설>

- 제76조(하부조직) ① 대학원대학교의 하부조직은 따로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7조(부속·부설기관) ① 대학원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박물관, 요양원<2013.04.23개정>
 2. 부설기관: 동방학술원 및 각 연구소, 동방어학원, 전문자격검정과정, 동방출판사, 동방신보사, 원격교육원<2017.01.20개정>
-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12.8.13개정>
-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8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 사서과를 두며, 사서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으로 보한다. <2006.11.9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 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2007.11.30신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07.11.30신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2007.11.30신설>

제78조의 3 (의료·요양기관) ① 우리 대학교 부속 의료·요양기관을 두고, 의료·요양기관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07.11.30신설>

② 의료·요양기관에는 진료업무 및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부원장을 둘 수 있고, 교원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2007.11.30 신설>

③ 원장은 의료·요양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07.11.30 신설>

④ 의료·요양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2007.11.30신설>

제 4 절 정 원

제79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2014.04.01개정>

제 8 장 보 칙

제8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일간)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8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 김응현

이 사 : 정하오, 김상철, 최형우, 이우복, 홍숙호, 김동현<2013.05.01수정>

감 사 : 김연동, 서정철

부 칙

1. (당초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 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1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1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현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7조 제2항은 현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서기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인 원
일 반 직	2급	1명
	4급	1명
	8급	2명
기 술 직	9등급	1명
합 계		5명

별표2

대학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 분	직 급	인 원
일 반 직	2급 - 3급	2명
	4급 - 5급	3명
	6급 - 7급	4명
	8급 - 9급	5명
기 술 직	7급-9급	4명
합 계		18명